

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” 제26조(판로지원 사업)에 따라 2024년 수출컨소시엄사업 주관단체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08. 28.
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## 2024년 수출컨소시엄사업 주관단체 모집 공고

### 1 사업개요

#### □ 사업목적

-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업종별 및 국가별 중소벤처기업 간 수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타겟시장 파견,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촉진 도모

□ 사업기간 : 2024년 1월 ~ 12월

□ 신청대상 : 업종별 협회 또는 단체, 수출유관기관(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, 민간전문기업 포함)

□ 사업규모(안) : 약 30개 컨소시엄 내외

- 사업신청은 지원분야별로 복수로 신청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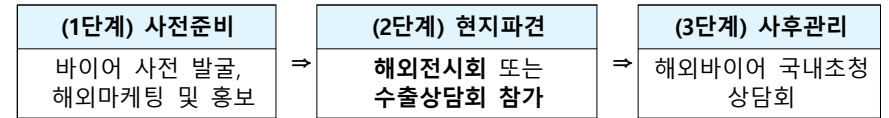
지원 분야	사업 수행방식
수출컨소시엄	업종별 단체 등이 주관하여 해외전시회 또는 상담회 운영
해외전시회(오프라인)	해외전시회에 한국관 조성, 참여기업 단체 파견
수출상담회(오프라인)	해외 타겟국에서 현지바이어 초청 1:1 수출상담회 개최

\* 최종 선정규모는 2024년 수출컨소시엄 예산(안) 확정규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예산규모 및 사업신청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예정

#### □ 사업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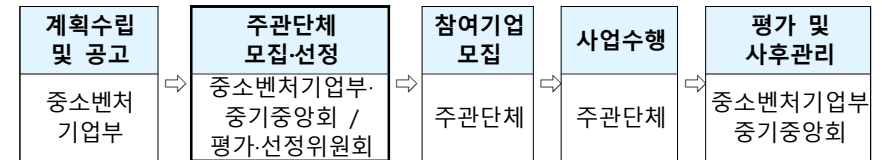
- 업종(품목)별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전시회 또는 현지 수출상담회 단체 참가시 해외마케팅 활동관련 비용 지원
- 사업은 **3단계**(사전준비-현지파견-사후관리)로 구성되며, 각각의 컨소시엄은 ‘현지파견’ 단계를 포함하여 **2단계 이상 필수진행**

#### < 수출컨소시엄사업 구조도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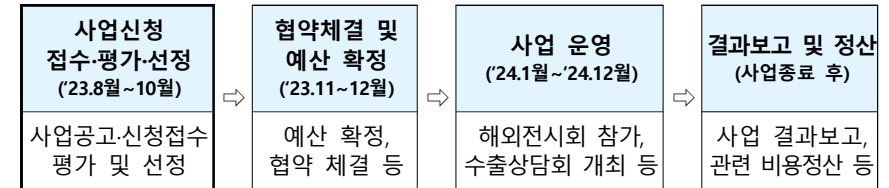


#### □ 추진절차 및 일정

- 추진절차



- 세부일정



## 2 지원내용 및 지원방식

### □ 지원내용

- 지원기간 : 2024년 1월 ~ 12월(사업종료일)
- 지원항목 : 전시·상담장 부스 임차료, 장치비 등 **공통경비 지원**

- 추진단계별 지원한도 70% 이내 지원\*

\* 세부 지원항목은 [참고1] 「수출컨소시엄 세부 지원 기준」 참조

### □ 지원방식

- 현지 파견 전, 사업별 기배정된 **국고보조금 예산의 90% 先지급**, 사업종료 후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제출 후 사후정산

- 적격증빙 지출금액에 한해 최종 정산·비용 지원하며, 미집행액은 반납 조치

\* 단, 각 사업년도 1분기 개최 전시회의 경우, 보조금 先지급 없이 사업종료 후 사후정산 예정

### □ 유의사항

- 사업 진행 중 운영지침이 개정된 경우, 개정된 운영지침 적용
- 2024년 정부예산 편성결과에 따라 선정된 사업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

## 3 신청자격

- (주관단체) 업종별 협회 또는 단체, 수출유관기관(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, 민간전문기업 포함)

- (참여기업) 중소기업기본법(제2조) 규정에 의한 '중소기업'

### ○ 사업별 지원대상 참여기업은 주관단체가 모집 및 선정

- 단,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(22.5.19 시행)에 따라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 참가 신청을 할 경우, 동 법 제5조에 따라 본회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필요

#### < 신청 및 지원 제외 대상 (주관단체 및 참여기업 모두 해당) >

- ① 세금(국세 및 지방세) 체납중인 경우
- ② 한국평가데이터(주)의 기업 신용정보 상, 연체, 부도, 금융질서문란, 법정관리·기업 회생신청·청산절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
- ③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
- ④ 휴·폐업중인 경우
- ⑤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

## 4 평가방법 및 선정

### □ 평가방법 및 항목

- (평가방법) 외부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된 수출컨소시엄 평가 위원회에서 서면평가
  - 단, 동일사업에 대해 복수 주관단체가 신청하고 서면평가 점수 격차가 3점 미만의 경우, 선정위원회에서 PT심사 실시 예정
- (평가항목) 정성평가 60점 + 정량평가 40점, 총 100점(± 가감점 10점)
  - (정성) 단계별 사업계획, 전략성, 주관단체 사업 운영능력 등 평가
  - (정량) 주관단체 해외마케팅 사업실적, 성과평과 결과 등 평가
- \* 세부 평가항목은 [참고2] 「수출컨소시엄 평가표」 참조
- (제외대상) 신청한 사업이 타 정부 부처의 지원을 받는 경우

□ 선정방법

- (최종선정) 수출컨소시엄 선정위원회 심의\*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선정  
\* 신수출동력 발굴, 주력산업 진흥 등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지원과제 추가 선정 가능
- (제외대상) ①평가점수 70점 미만의 경우 및 ②기선정된 '23~'25년 유망수출컨소시엄 사업을 포함하여 2024년 해당 주관단체 수행 사업이 4개를 초과할 경우

**5** 신청 및 접수

□ 신청·접수 기간 : 2023. 8. 28(월) ~ 9. 8(금) 17:00까지 \* 시간엄수

구 분	기 간
공고일	8.28(월)
신청·접수	8.28(월)~9.8(금)
평가·선정	9.11(월)~10.27(금)
선정결과 발표	11월 중
예산배정·협약체결	11~12월

※ 세부 추진일정은 업무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□ 신청방법

**※ 우편접수 미 시행**

-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([www.smes.go.kr/sme-expo](http://www.smes.go.kr/sme-expo)) 온라인 접수
  - 신청경로 : 접속 → 로그인 → 사업신청 → 주관단체 사업 모집
  - 필수정보 입력 후, [참고4]의 제출서류를 하나의 zip파일로 업로드

□ 유의사항

-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사업선정 후 허위사실이 추가로 밝혀질 경우, 사업선정 취소 및 추후 사업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
-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가로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, 필수서류 및 보완요청서류 미제출, 제출기한 미준수 등은 사업선정 평가에서 제외
- 신청시 작성한 서류나 제출자료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- 신청서류의 기재사항 오류, 서류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, 그 책임은 신청 주관단체에 있음
-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「수출컨소시엄사업 운영 지침」에 따름

□ 문의처

-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무역촉진팀 (02-2124-3250, 3251, 3253)

**붙임1** 참가신청서

**2024 수출컨소시엄 참가 신청서**

1. 수출컨소시엄

I. 기본사항	현지파견단계	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전시회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출상담회				
	주관단체명	대표자명				
II. 사업개요	사업명	*(전시회/상담회) 2024 + 국가명 + 도시명 + 품목 + 전시회/상담회명 + 수출컨소시엄 (1단계)				
	단계별 추진일정	(2단계) * 2개 이상 지역파견 시 지역별 일정명기 (3단계)				
	파견지역	* 국가 및 도시명 기재				
	참여기업	개사	총면적(전시회) sqm	홍보부스면적(전시회) sqm		
	대표품목	(HS code : )				
	특이사항	* 2개 이상 사업신청 시 선정우선순위 및 주관단체 지원사항 등 기재				
	현지수행사	수행사명	대표자명			
	전시회 *해당 시	명 칭	영문	(원명)		
			(약칭)			
		국문				
주최자			주최자홈페이지			
개최연혁		년부터 개최	개최주기	연2회, 매년, 격년, 기타( )		
기 간		2024.00.00.~2024.00.00.	한국에이전시			
장 소		(국가명)	(도시명)	(건물명)		
전시품목			기본부스	sqm		
최근년도 전시회 현황		연도	참가국수	참가업체수	참관객수	
					개최면적(sq) 한국관유무	
				○, X		
주관단체참가	( )년부터 ( )회 참가, 최근 참가년도 ( ), 한국관 주관 여부 (○,X)					
전시회 특징	*예시 : 세계 최대 oo산업 전문전시회, oo지역(국가) 최대 전시회 등					
III. 예산계획 *세부 예산과일 제출必		1단계(천원)	2단계(천원)	3단계(천원)	구성운영(천원)	총 액(천원)
	국고지원					
	기업부담 등					
	합 계					
IV. 중복지원	동 사업으로 타 정부기관, 지자체 예산지원 신청여부 :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,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신청					
* 예산작성 기준환율 : 달러(USD) 1,300원, 유로(EUR) 1,400원, 엔(JPY) 900원, 위안(CNY) 180원, 파운드(£) 1,600원, 싱가포르(\$) 900원 기준으로 작성						

2. 주관단체

I. 단체(기업) 개요	단체(기업)명				대표자명		
	사업자번호				상근직원수	명	
	설립일				회원사수	개사	
	주소						
	담당자 연락처	부서/직위				담당자명	
전화					휴대폰		
E-Mail					FAX		
주요사업				전시주최 유무	○ (전시회명 : ), X		
II. 수출지원 조직인력	담당부서명				해외조직 유무	○ (국가 : ), X	
	인력 및 경력현황	성명	부서	직급	경력연수	주요경력	관련 자격증
III. 해외수출 지원사업 실적 *최근 3년 (2020~2023년) **별지 사용 가능	구분	연도	명 칭		참여기업수	지원기관	
	(전시회)						
	(상담회)						
	:						

상기와 같이 2024년 수출컨소시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. 상기 내용은 사실에 바탕하여 작성되었으며, 향후 사실이 아닌 내용이 확인되거나 타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별도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업 참여취소,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 전액을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.

2023년 월 일

단체명 : 대표자 : (직인)

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

**붙임2** 사업계획서

『○○○수출컨소시엄』 사업계획서

1. 전시회 개요 ※ 상담회의 경우 '전시회 개요' 생략 가능

- 전시회명 : (국문)  
(영문)
- 개최기간 및 장소 :
- 주최자 :
- 한국 에이전트(혹은 지사) :
- 면적 : m<sup>2</sup> (옥내 : m<sup>2</sup>, 옥외 : m<sup>2</sup>)
- 개최주기 :
- 성격 :
- 주요전시품목 :
- 전시회 규모 ※ 개최 최근년도 또는 직전년도 기준 작성

참가국수	개최면적 (s/f,s/m)	참가업체수			참관객		
		개최국	해외	총계	개최국	해외	총계

2. 수출컨소시엄 개요

- 사업명 : 국가명 + 도시명 + 품목 + 전시회/상담회명
- 추진기간 :
  - (1단계) 2024. 00. 00 ~ 00.00 (00일간)
  - (2단계) 2024. 00. 00 ~ 00.00 (00일간)
  - (3단계) 2024. 00. 00 ~ 00.00 (00일간)

- 타겟시장 : \* 국가 및 도시명 기재
- 참여기업 : 00개사
- 참여품목 : 00품목, 00품목
- 총 예산 : 00천원  
(정부지원금 00천원, 주관단체 부담금 00천원, 기업부담 00천원)
- 성과목표 설정

	목표치	비고 (목표설정 근거 등)
상담액	건, 달러(US)	
현장 계약액	건, 달러(US)	
1년내 예상계약액	건, 달러(US)	

추진일정

단계	기간/일자	내용	비고
1단계		참가업체 모집	
		시장조사, 바이어 발굴	
		현지홍보 등	
2단계		현지 운영 *지역별	
		현지 운영 *지역별	
3단계		바이어 초청상담회	
		참여기업 성과 및 바이어 관리	
종료		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제출	

- 기타 특이사항 :

### 3. 단계별 운영계획

#### 가) 1단계 (사전준비단계)

목표시장 진출전략

- \* 전년도 분석, 목표시장 특성 및 선정 이유
- \* 품목 전략(주요 구성품목의 세계시장 규모 및 국내 수출규모 통계 등)
- \* 품목 경쟁요소 분석(가격, 기술, 품질, 마케팅, 유통) 및 주요경쟁국 분석

참여기업 모집 및 교육

- \* 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
- \* 참여기업 모집, 선정(기업 참가비 계획, 선정시 시장성 평가 반영여부 등)
- \* 업체교육 및 업체수요 반영계획(진행계획 안내, 상담스킬, 상담장·부스연출기법 교육, 부스배정, 협력업체 선정 등)

현지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

- \* 바이어 발굴전략, 수행사 위탁수행 여부

현지 홍보

- \* 마케팅 전략(홍보물, 현지광고 등), 수행사 위탁수행 여부 포함

장치사, 운송사 등 협력업체 선정계획

#### 나) 2단계(현지파견단계)

현지활동 개요

- 개최 일자 :
- 개최 장소 : \*상세지역, 호텔명
- 전시회명 :
- 한국관 또는 통합한국관 계획

	기본 면적 (sqm)	업체수	총 면적 (sqf,sqm)	업체부스 (sqm)	홍보부스 (sqm)
신청 주관단체					
타정부기관 지자체					
개별 참가					

전시부스·상담장 운영

- \* 전년도 분석(한국관 위치 표시한 전시장 도면, 상담장 사진 등)
- \* 금년도 개선방안(한국관 위치, 상담장 구성, 업체수요 반영방안)
- \* 상담장·전시부스의 디자인연출, 제품디스플레이 방안 등
- \* 전시부스 사전예약임차 여부, 임차료 지급여부, 임차방법(개별기업 임차, 주관단체 일괄임차)
- \* 장치 설치방법(주최측 설치, 국내제작 후 운반설치, KOTRA 협조, 현지용역업체와 계약 등)

현지 파견일정 \*일자별 작성

일 자	국가, 지역	주요 내용	비고

#### 다) 3단계(사후관리단계)

바이어 초청계획

- \* 일정, 운영방식 등

바이어 관리 및 참여기업 성과관리

- \* 바이어 데이터 관리계획 등

### 4. 주관단체 운영 계획

참여기업 지원방안

- \* 전년도 주관단체 역할 분석, 차별화된 참여중소기업 지원방안
- \* (상담회) 공동마케팅 활동 개선방안 (전시회) 공동홍보부스 개선방안
- \* 바이어 데이터 관리 및 최신성 유지 방안
- \* 주관단체 역량강화 계획 등

현지 수행사 현황

- \* 2개 이상의 수행사가 있는 경우 모든 수행사 현황을 작성

수행사명					
대표자명			전화번호		
주소					
매출액			상시근로자수		
담당자	(성명)	(전화)	(이메일)		
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코트라		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민간네트워크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전문무역상사		<input type="checkbox"/> 업종별 협단체		
	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인증보유사				
관련사업 수행실적	사업명	기간	참가국, 지역	참가 업체수	주관기관 (지원기관)

- ※ 해외민간네트워크, 전문무역상사 등의 인증허가가 있는 경우 사본 첨부
- ※ 정부기관 또는 현지국가의 업종단체를 현지수행기관으로 할 경우 사업추진부서 현황 및 마케팅 지원실적 작성 불필요

○ 수행사 인력현황 \* 조직도 본문 삽입 또는 별첨

성명	부서(직급)	경력연수	주요경력	관련 자격증

## 5. 정부 및 유관기관 협조사항

## 6. 복수로 사업 신청시 우선순위 기재

※ 별첨 : [참고4] 제출서류

## 참고1 수출컨소시엄 세부 지원 기준

### 수출컨소시엄(해외전시회) 세부 지원기준

단계	지원항목	지원비율	한도	비고
1단계 (사전 준비)	■ 사전B2B마케팅	-	100만원/ 업체	· 사전 바이어 정보제공, 전시회 前 온라인 상담 · 바이어 상담 스킬 컨설팅 등 사전교육 · 현지시장에 맞춘 가격 파킹 마케팅 등 전반적인 컨설팅 * Kotra 활용시 Kotra 상담추선용역 단가 적용
	■ 해외마케팅-홍보	-	100만원/ 업체	· 온오프라인 해외홍보-광고 · 외국어 공동 카달로그, 전자 카달로그 등 * 공동카달로그 등에 컨소시엄명, 중기부중앙회 CI 표기
2단계 (현지 파견)	■ 전시장 임차료	-	-	· 기업당 1부스 內 (보험등록료, 의무납부 세금 포함) * 대형전시물 현장운영 등 관리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기업당 최대 4부스(36㎡)까지 지원
	■ 전시장 장치	70% 이내	-	· KOTRA 전시디자인설치비 단가 * 장치고도화 계획을 관리기관에 사전제출, 전시 부스 디자인 검토 및 승인 후 최대 100%까지 지원
	■ 차량 임차	-	-	· KOTRA 무역사절단 차량임차단가 준용하여 실비 인정 * 파견기간 + 최대 2일, 업체별 차량임차 불인정
	■ 통역비	-	1인/업체	· KOTRA 통역원 단가 한도 內 실비 인정
	■ 기타 마케팅 활동	-	-	· 세미나, 컨퍼런스 등의 임차료, 강사료 * 관리기관 사전협의 필수
	■ 물품운송료	100%	해상운송 1CBM 편도	· 전시물품에 한함 (대형전시물은 4CBM까지 인정) * 산업재(기술유출 우려 시) 왕복 지원, 사전 협의 必 * 1CBM : 가로/세로/높이가 각 1m 이내의 부피 * 항공 및 핸드캐리 비용은 해상운송에 준하여 적용
3단계 (사후 관리)	■ 국내 체류비	-	최대 30만원/ 1인,1일	· 참여기업 1개사 당 1인 바이어 초청 원칙 · 최대 인정일수 : 상담일수+2일(숙박비만 인정 Standard) * 주관단체가 직접 국내활동비 집행시 입증자료 제출
	■ 초청 바이어 항공료	-	-	· 이코노미 왕복 1명
	■ 상담장-차량 임차 및 장치	70% 이내	-	· 임차료 및 현수막, X배너 등 실비 인정 * 차량임차 : 파견기간 + 최대 2일 (업체별 차량임차 불인정)
	■ 바이어 신용조사비	-	-	· 공인기관이 수행한 신용조사비 실비 인정
	■ 통역비	-	-	· 영어 중국어 일어 20만원 특수어 30만원 한도 실비 인정
	■ 샘플발송비	-	100만원/ 업체	· 항공운송 기준(편도) 한도 내 실비 인정

## 수출컨소시엄(수출상담회) 세부 지원 기준

단계	지원항목	지비율	한도	비 고
구성 운영 단계	■ 공동 홍보부스	100%	-	· 1부스 이내 임차(2부스 이상은 관리기관 사전승인 必) · 장치비는 KOTRA 전시디자인설치비 단가 적용
	■ 전시장 회선임차료		-	· 인터넷 2회선 이내
	■ 주관단체 통역비		1인/단체	· KOTRA 통역원 단가 한도 내 실비 인정 * 주최 측, 내방객 회의/인터뷰, 바이어 응대 등
	■ 주관단체 물품운송료		해상운송 1CBM 편도	· 공동카달로그 등 홍보관 운영관련 주관단체 물품에 한함(1CBM 이내)
	■ 주관단체 담당자 항공료, 국외여비		-	· 공무원(5급) 출장 기준(1인, 1회) * 컨소시엄 규모 16개사 초과 시 1인, 1회 추가 [참고3] 국외여비 기준 한도 · 항공료 및 숙박비는 한도 내 실비 인정
	■ 간담회비(국내)		5만원/업체	·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실비 인정
	■ 간담회비(현지)		5만원/업체	·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실비 인정
	■ 기타 운영비		5만원/업체	· 주관단체 출장자 비자발급, 여행자 보험, 예방 접종, 방역용품, 사업용 문구비 등 최대 100 만원 한도 내 실비 인정 * 업무추진비성 경비 및 외주 진행시 비용 등 불인정
	■ 이행보증보험		100%	-

\* 사업별 최소 2단계 이상 수행 필요

\*\* 구성운영단계 지원은 총 사업비의 15%(공동홍보부스, 회선임차 제외)를 초과할 수 없음

단계	지원항목	지비율	한도	비 고
1단계 (사전 준비)	■ 사전B2B마케팅	-	100만원/ 업체	· 사전 바이어 정보제공, 상담회 前 온라인 상담 · 바이어 상담 스킬 컨설팅 등 사전교육 · 현지시장에 맞춘 가격 파킹 마케팅 등 전반적인 컨설팅 * Kotra 활용시 Kotra 상담주선용역 단가 적용
	■ 해외마케팅-홍보	-	100만원/ 업체	· 온오프라인 해외홍보-광고 · 외국어 공동 카달로그, 전자 카달로그 등 * 공동카달로그 등에 컨소시엄명, 중기부중앙회 CI 표기
2단계 (현지 파견)	■ 상담장 임차료	70% 이내	-	· KOTRA 무역시절단 상담장 임차료 준용하여 실비 인정
	■ 상담장 장치		-	· 상담장 구성(현수막, X배너 등) 실비 인정
	■ 차량 임차		-	· KOTRA 무역시절단 차량임차단가 준용하여 실비 인정 * 파견기간 + 최대 2일, 업체별 차량임차 불인정
	■ 통역비		1인/업체	· KOTRA 통역원 단가 한도 내 실비 인정
	■ 기타 마케팅 활동		-	· 세미나, 컨퍼런스 등의 임차료, 감사료 * 관리기관 사전협의 필수
3단계 (사후 관리)	■ 물품운송료	100%	해상운송 1CBM 편도	· 전시물품에 한함 (대형전시물은 4CBM까지 인정) * 기술유출 우려가 있는 산업재(기계, 전기전자 등)는 왕복 지원 * 1CBM : 가로/세로/높이가 각 1m 이내의 부피 * 항공 및 핸드캐리 비용은 해상운송에 준하여 적용
	■ 국내 체류비	-	최대 30만원/ 1인.1일	· 참여기업 1개사 당 1인 바이어 초청 원칙 · 최대 인정일수 : 상담일수+2일(숙박비만 인정, Standard) * 주관단체가 직접 국내활동비 집행시 입출자료 제출
	■ 초청 바이어 항공료	70% 이내	-	· 이코노미 왕복 1명
	■ 상담장·차량 임차 및 장치		-	· 임차료 및 현수막, X배너 등 실비 인정 * 차량임차 : 파견기간 + 최대 2일 (업체별 차량임차 불인정)
	■ 바이어 신용조사비		-	· 공인기관이 수행한 신용조사비 실비 인정
	■ 통역비	-	-	· 영어 중국어 일어 20만원 특수어 30만원 한도 실비 인정
■ 샘플발송비	-	100만원/ 업체	· 항공운송 기준(편도) 한도 내 실비 인정	
구성 운영 단계	■ 주관단체 담당자 항공료, 국외여비	100%	-	· 공무원(5급) 출장 기준(1인, 1회) * 컨소시엄 규모 16개사 이상 시 1인, 1회 추가 · 항공료 및 숙박비는 한도 내 실비 인정
	■ 주관단체 통역비		1인/단체	· KOTRA 통역원 단가 한도 내 실비 인정 * 주최 측, 내방객 회의/인터뷰, 바이어 응대 등
	■ 주관단체 물품운송료		해상운송 1CBM 편도	· 공동카달로그 등 상담회 운영관련 주관단체 물 품에 한함 (1CBM 이내)
	■ 간담회비(국내)		5만원/업체	·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실비 인정
	■ 간담회비(현지)		5만원/업체	·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실비 인정
	■ 기타 운영비		5만원/업체	· 주관단체 출장자 비자발급, 여행자 보험, 예방 접종, 사업용 문구비, 방역용품 등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실비 인정 * 업무추진비성 경비 및 외주 진행시 비용 등 불인정
	■ 이행보증보험		100%	-

\* 사업별 최소 2단계 이상 수행 필요

\*\* 구성운영단계 지원은 총 사업비의 15%를 초과할 수 없음



**참고2 수출컨소시엄 평가표(주관단체)**

구분	하위항목	배점	평가구분					비고
			A	B	C	D	E	
사업계획 (4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[1단계] 사전 준비/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목표시장 진출전략(경쟁요소 분석 등)</li> <li>- 기업모집 교육전략(부수연출, 상담기법 등)</li> <li>- 바이어 발굴, 매칭 계획</li> <li>- 현지 사전마케팅 계획</li> </ul> </li> <li>○ [2단계] 현지파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한국관 위치, 디자인, 현지화전략</li> <li>- 상담장 운영계획</li> <li>- 세부 파견일정 계획</li> <li>- 업체수요 반영 계획</li> </ul> </li> <li>○ [3단계] 후속상담 및 사후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바이어 초청상담회 계획</li> <li>- 기업 성과관리 및 사후지원계획</li> <li>- 바이어 데이터 관리계획</li> </ul> </li> </ul>	15 (3)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	전문가 평가
		15 (3)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	
		15 (3)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	
전략성 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전시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응모성</li> <li>- 품목 전략성</li> <li>- 신시장·신제품 개척 노력</li> </ul> </li> <li>○ (상담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지수행사 역량</li> <li>- 품목 전략성</li> <li>- 신시장·신제품 개척 노력</li> </ul> </li> </ul>	10 (2)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	
		10 (2)	10	8	6	4	2	
주관단체 FO-운영능력 (4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예산 및 사업수행을 위한 네트워크 보유 등 운영능력의 적절성</li> </ul>	5 (1)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	
		5 (1)	5	4	3	2	1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부, 지자체 해외마케팅 사업실적 (최근 3년)</li> </ul>	5 (1)	5회 이상	3회 이상	1회 이상	없음		
		5 (1)	5	4	3	2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해외마케팅 전담인력 (겸직 제외)</li> </ul>	전담인원수	2.5 (0.5)	5명 이상	4명	3명	2명	1명
경력이 가장 1인 기간		2.5 (0.5)	10년 이상	7~9년	5~6년	3~4년	3년 미만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관단체 성과평가</li> </ul>		30 (3)	상위10% 이내	상위30% 이내	상위50% 이내	상위60% 이내	상위60% 초과	외부용역기관
		30 (3)	30	27	24	21	18	
가감점 (±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가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동상표 보유여부(+2점)</li> <li>- 참가전시회 정보(Review) 작성여부(+1점)</li> <li>- FTA 체결국 개척 사업 여부(+1점)</li> <li>-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추진(결산서상 수익발생시)(+2점)</li> <li>- 신규전시회 발굴(+2점)</li> </ul> </li> <li>○ 감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예산대비 집행률(주관단체별 최대 -2점)</li> <li>- 사업취소 중도포기(각 -3점)</li> <li>- 참여기업 민원 접수(각 -2점)</li> </ul> </li> </ul>	±10	1. 감점 제외 천재지변, 해당국가 소요상황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업취소 중도포기한 사례로 관리기관이 승인하는 경우 감점 제외 2. 신규 전시회 발굴 가점 최근 5년 이내 선정되지 않은 전시회로 '19년 이후 신청 및 선정 이력이 없는 신규 전시회 3. 사업별 예산대비 집행률 감점 =(정산결과 집행액/1차보조금 교부시 예산총액)*100 - 집행률 98.0% 이상 : 감점 없음 - 95.0% 이상 : -0.5점 / 90.0% 이상 : -1.0점 - 85.0% 이상 : -1.5점 / 85.0% 미만 : -2.0점 * '22년 추진사업별 집행률 선정 후 주관단체별 최저 집행률 사업 1건에 대한 점수 감점 반영					
합계		100						

\* 신규단체는 직전년도 수출컨소시엄 참여 주관단체의 성과평가 평균점수를 적용

**참고3 국외 여비 기준**

(단위 : 미국 달러화(\$))

국가 및 도시별 등급	일비	숙박비	식비	항공료
가	30	176	81	일반석 실비
나	30	137	59	
다	30	106	44	
라	30	81	37	

1.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.

가. **가등급** : 도쿄, 뉴욕, 런던, 로스앤젤레스, 모스크바, 샌프란시스코, 워싱턴 D.C., 파리, 홍콩, 제네바, 싱가포르

나. **나등급**

- 1) **아시아·오세아니아주** : 베이징, 사모아, 오스트레일리아, 인도, 일본, 카자흐스탄, 쿡제도, 타이완, 파푸아뉴기니
- 2) **남·북아메리카주** : 멕시코, 미국, 바베이도스, 세인트루시아,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, 세인트키츠네비스, 아이티, 앤티가바부다, 자메이카, 캐나다, 트리니다드토바고
- 3) **유럽주** : 그리스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덴마크, 독일, 러시아, 룩셈부르크, 벨기에, 사이프러스, 스웨덴, 스위스, 스페인, 아이슬란드, 아일랜드, 영국, 오스트리아, 이탈리아, 포르투갈, 프랑스, 핀란드, 헝가리
- 4) **중동·아프리카주** : 가나, 가봉, 남수단, 남아프리카공화국, 리비아, 모로코, 바레인, 사우디아라비아, 세이셸, 아랍에미리트, 앙골라, 에티오피아, 오만, 우간다, 이스라엘, 이집트, 적도기니, 카타르, 코트디부아르, 콩고민주공화국, 쿠웨이트

다. **다등급**

- 1) **아시아·오세아니아주** : 뉴질랜드, 니우에, 마셜군도, 말레이시아, 방글라데시, 브루나이, 아제르바이잔, 인도네시아, 중국, 키르기스공화국, 타이, 터키, 투르크메니스탄, 파키스탄, 피지
- 2) **남·북아메리카주** : 가이아나, 파테말라, 도미니카공화국, 베네수엘라, 벨리즈, 브라질, 아르헨티나, 에콰도르, 우루과이, 칠레, 코스타리카, 파나마
- 3) **유럽주** : 라트비아, 루마니아, 리투아니아, 몬테네그로, 불가리아, 세르비아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, 에스토니아, 우크라이나, 체코, 크로아티아, 폴란드
- 4) **중동·아프리카주** : 기니, 나이지리아, 니제르, 라이베리아, 레바논, 르완다, 말리, 모리셔스, 모잠비크, 보츠와나, 부르키나파소, 상투메프린시페, 세네갈, 수단, 스와질란드, 시에라리온, 아프가니스탄, 알제리, 요르단, 이라크, 잠비아, 중앙아프리카공화국, 카메룬, 케냐, 탄자니아

라. **라등급**

- 1) **아시아·오세아니아주** : 네팔, 동티모르, 라오스, 몽골, 미얀마, 미크로네시아, 베트남, 스리랑카, 우즈베키스탄, 캄보디아, 타지키스탄, 통가, 필리핀
- 2) **남·북아메리카주** : 니카라과, 볼리비아, 수리남,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, 콜롬비아, 파라과이, 페루
- 3) **유럽주** : 마케도니아, 몰도바, 벨라루스,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, 알바니아
- 4) **중동·아프리카주** : 감비아, 기니비사우, 나미비아, 레소토, 마다가스카르, 말라위, 모리타니, 소말리아, 에덴, 이란, 짐바브웨, 튀니지

2. 제1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출장 예정지에서 제1호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.

**참고4**

**제출서류 목록**

순번	구분	신청서류	비고
1	필수 (공통)	참가신청서	[붙임1] 직인 후 스캔
2		사업계획서	[붙임2] 작성
3		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	사본
4		법인설립 인·허가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	사본
5		2022년 재무제표(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)	사본
6		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	발급일 30일 이내
7		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	발급일 30일 이내
8		수출지원 전담인력 경력증명서 등	사본
9		예산세부내역	별도 엑셀파일 양식
10		해상운송 견적서	해상편도 1CBM 기준
11	필수 (전시회)	신청 전시회 주최사 브로셔 또는 인보이스 * 2024년 미공개시, 직전개최 자료로 대체	부스임차료 및 등록비 등은 제출서류로 해당금액 반드시 확인 필요
12	해당시	타 부처 및 지자체 해외마케팅 사업 실적 증명서	사본 (코트라 실적증명서 제외)
13		현지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인증서	사본
14		참가전시회 정보(Review) 작성자료	해외전시포털 등록화면 캡처
15		공동상표 증빙자료	사본

\* 상기 서류 제출은 접수마감일인 9.8(금) 17:00까지 해외전시포탈에 제출 마감 **必**

\*\* 제출서류는 상기 순서대로 정리하여, 하나의 zip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필요

\*\*\* 필수서류 누락 시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